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 번호	2019-84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어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다.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6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9.25.~10.15.) 결과 : 2019. 9월 중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라 함은 이미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증진”이라 함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 등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서경찰서장

2. 강서소방서장
 3.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안전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6.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7.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라고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제3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기피·회피,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존속기한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안전관련 사업추진 관련 연구용역과 공인 등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의 전제 : 강서구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및 기타 제반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	구비	-	-	-	-	
세출	연구용역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520,000
	일반운영비	5,000	15,400	15,400	15,400	51,200
	업무협약비	-	11,000	11,000	11,000	33,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안전도시 사업 연구용역 : 520,000,000원
 - 지역안전도 진단 등 기본조사 연구용역(1년차)
 - 공인사업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2년차,3년차)
 - 사업 성과평가 및 공인선포식 업무지원 용역(4년차)
- ▶ 위원회 운영비, 홍보비 등 : 51,200,000원
- ▶ 업무협약비 : 33,000,000원(3개년 간)
 - 아시아지역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5. 작성자 :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 과장 이광석

(담당 : 행정7급 이현희 ☎ 2600-6440)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 제정사유

- 국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어 안전환경도시 강서 구현

□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1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 사업,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40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안전관리과	통보(조치)일		2019. 10. 1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49		
정책명	강서구안전도시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안전관리과	
	담당자명	이현희	전화번호 02-2600-644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관리과)	강서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어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강서구안전도시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안전관리과장 귀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